21년 사업장 화학물질 규제변화와 대응방안

㈜ 켐토피아 김도훈



기적의 개발 그러나

DDT (1939~1973)



- ✓ 울새, 송어 등 생태계 악영향
 - 레이첼 카슨, 침묵의 봄(1962)
 - 미국 DDT 사용 금지(1973)

- ✓ 기적의 물질(1939)
 - 말라리아 구제, 해충 박멸 등
 - 개발자(P.H.Muller) 노벨상 수상(1948)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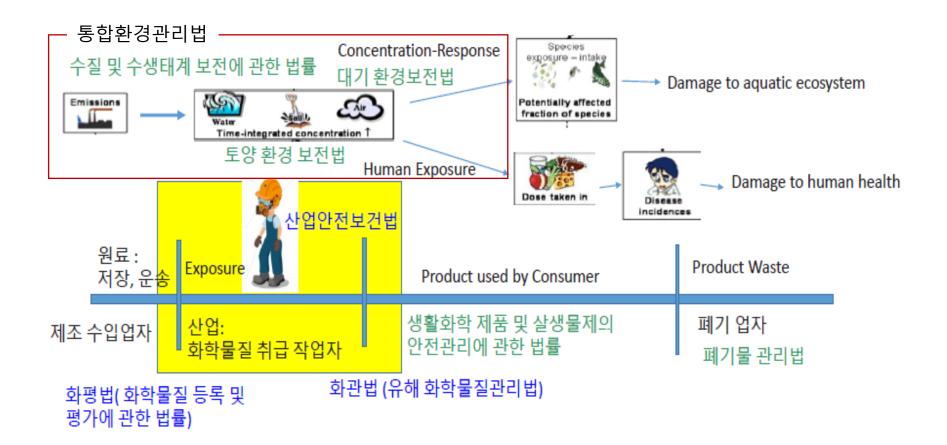
이슈물질

비스페놀A

차아염소산나트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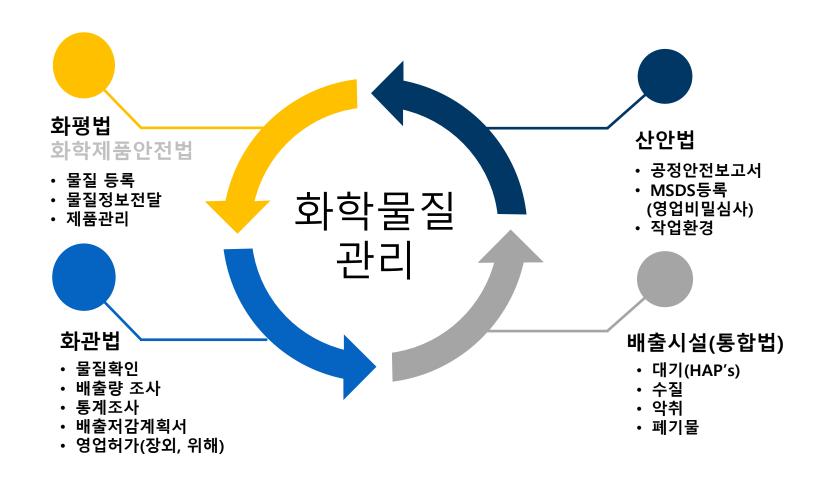


화학물질관리 규제 카테고리





화학물질관리 규제이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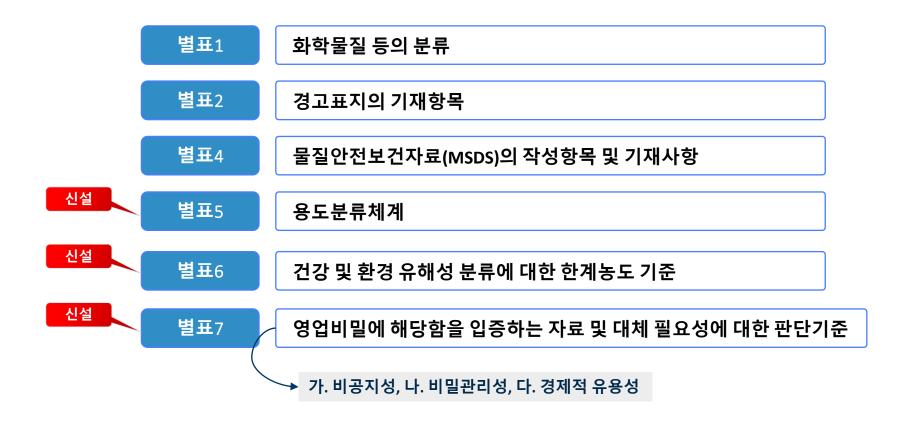




산업안전보건법



MSDS 관련 법률 개정(2021.01.16 시행)





MSDS 관련 법률 개정(2021.01.16 시행)

	개정 전(현행)	개정 후	비고
MSDS 작성대상	• 유해·위험한 화학물질 및 이를 함유한 제제 (약칭 – 대상화학물질)	유해·위험한 화학물질 또는 혼합물 (약칭-물질안전보건 자료 대상물질)	작성 대상은 동일명칭만 변경
MSDS 작성주체	• 대상화학물질 양도·제공자	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 제조·수입자 	• 양도·제공없이 제조·수입하여 사용하는 자도 포함
MSDS 기재항목	• 대상화학물질의 명칭	• 제품명	• 작성대상은 동일하나, 이를 명확히 함
	• 모든 구성성분의 명칭·함유량	• 구성성분 중 유해·위험한 화학물질의 명칭·함유량	• UN GHS 국제 기준과 동일하 게 적용
MSDS 제출	• 규정 없음	•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	• 정부는 MSDS를 제출 받아 관리



MSDS 고용노동부 제출

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(법 제110조)

①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로서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것(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은 제외한다. 이하 "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"이라 한다)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자료(이하 "물질안전보건자료"라 한다)를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MSDS 제공 주체 (법 제111조)

MSDS 작성 및 제출 주체는 제조자 및 수입자

- ①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양도하거나 제공하는 자
- ②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한 자

MSDS 제공 방법 (시행규칙 제 160조)

- 제출 시 부여된 번호가 기재된 MSDS 제공 필요
- 동일 번호가 기재된 MSDS는 최초 1회 제공(요청받은 경우 제외)



MSDS 고용노동부 제출

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ㆍ제출 제외 대상 화학물질 (시행령 제86조)

- 타법에서 관리하는 물질
- 일반소비자의 생활용으로 제공되는 물질
-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연구.개발용 화학물질 또는 화학제품
- 위해성이 적어 별도 고시된 물질

R&D용 물질(별도 고시된 물질)의 MSDS 제출 면제 가능(시약은 해당 없음)

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 (시행규칙 제157조)

- ① 제출 방법 : 안전보건공단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IT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가능 (부득이하게 시스템 제출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 제출 가능)
- ② 제출 시기: MSDS 작성대상물질을 제조/수입 전에 공단에 제출

MSDS에 변경 발생시 변경제출 필요 (시행규칙 제159조) 변경 사항 발생시 즉시 제출(유예기간 없음)

- 다음 각 호에 변경사항 발생시 MSDS 변경 필요
 - 1. 제품명(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의 변경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)
 - 2.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 중 제141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(제품명의 변경 없이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만 변경된 경우로 한정한다)
 - 3.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, 물리적 위험성



MSDS 고용노동부 제출

제조·수입전(前) 제조·수입자가 고용노동부에 MSDS 제출 필요!

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 기한 특례 (유예기간, 연간 제조/수입량 기준)



현재 제조/수입하고 있는 제품에 한해 상기 특례 적용! 시행일(1월 16일) 이후 제조/수입하는 제품은 유예기<u>간 없음</u>

변경 사항 발생시 즉시 제출(유예기간 없음)



산안법-이행사항(분류되지 않는 물질)

■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[병지 제62호사석]					
w 484101 o	화학물질 확인서류				
점수번호	 용 식상이 어두운 간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표를 합니다.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인 처리기간 즉시 				
		- 신고번호()	[]비해당		
	사업자등록번호	대표자 근로자 수	②업종		
수입자	주소				
	전화번호	(전자우편주소: 팩스번	ĝ)	
③구분	[] 연구개발용 []	[] 연구개발용 [] 비연구개발용			
④제품명	○ 물질만전보건자도(MSDS) 성의 제품명과 동일한 제품명을 기제				
국외 제조자	사업장명(명칭) 주소	제조국			
(점심병호) 동 화학제품을 구성하는 화학물질(또는 단일 화학물질)에는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 물질 이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합 니다.					
「산업안전보건법」 제110조제2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7조에 따른 확확물질 확인서류를 제출합니다.					
년 월 일 수입자: (서명 또는 인)					
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이사장 귀하					
불임 서류 1. 국외제조자로부터 확인받은 화작물질 관련 확인 서류(Letter of confirmation, LOC) 없음					
작성방법 1. ①단은 신청안이 법 제113조에 따른 선임안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표시합니다. 1. ②단은 한국표순선업본에 따른 시업의 종류를 적습니다. 2. ②단은 연구개발을 및 비연구개발을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. 3. ④단은 연구개발을 및 비연구개발을 중 하나를 표시합니다. 4. 불임 서류(CD(에는 윤의 확인내용이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여, 이를 증명할 수 있도록 국외제조자의 작인(또는 서명/인)을 받아 제공해야 하나다.					

산업안전보건법 법률 제157조 (물질안전보건자료 등의 제출방법 및 시기)

① 법 제110조제1항에 따른 물질안전보건자료 및 같은 조 제2항 본문에 따른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에 관한 자료(같은 항 제2호에 따라 물질안전보건자료에 적힌 화학물질 외에는 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이 없음을 확인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서식의 화학물질 확인서류를 말한다)는 물질안전보건자료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기전에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.

LOC의 법적서식은 없음!



산안법-이행사항(분류되지 않는 물질)

날짜: (년.월.일 기재)

수출자 확인서

수입업체명 : (사업장명 기재) 품명 : (품명, 모델규격 기재)

상기 물품의 성분내역서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,

물질안전보건자료에 기재된 구성성분 외에 다른 구성성분은 대한민국의 산업안전보건법상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되지 않음을 확인 드립니다.

성명 : (성명기입) 서명 또는 인 직위 : (과장, 부장 등 직위 기재)

부서 : (부서 기재) 주소 : (주소 기재)

전화번호 : (전화번호 기재) 팩스 : (팩스번호 기재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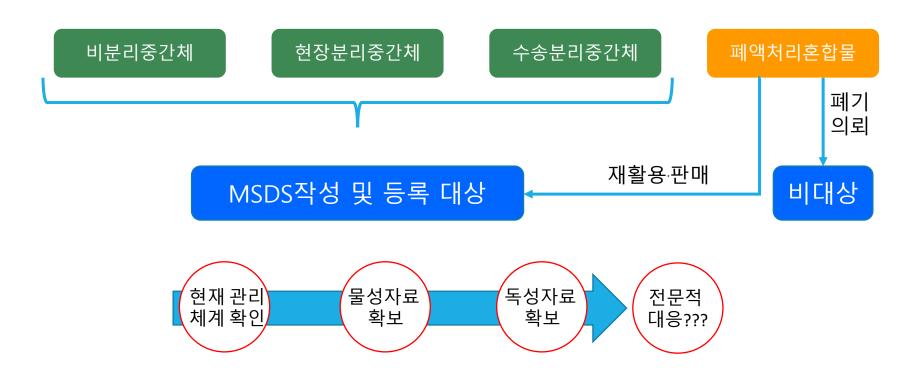
이메일 : (이메일 기재)

출처: MSDS 제출 제도안내서(안전보건공단)



공정중 중간체의 MSDS

사업장내 중간체는 대상?





영업비밀 사전승인 제도

	개정 전(현행)	개정 후	비고
MSDS 대체자료	• 화학제품 양도·제공자가 영업비밀 여부를 자의적 으로 판단하여 MSDS에 화학물질명 미기재 가능	 고용노동부 장관의 사전승인 후 영업비밀 사용 가능 비공개 승인을 받더라도 '대체 명칭', '대체 함유량'을 기재 	
	• 규정 없음	 비공개 승인의 유효기간 5년 유효기간 만료 전에 연장 승인 신청 (횟수 제한 없음) 	• 승인결과에 따라 이의신청(1회에 한함) 가능

※ 사전승인 수수료는 곧 발표_중소기업 감면 혜택 있을 예정



영업비밀 사전승인 제도

제출 방법

안전보건공단에서 구축하여 운영하는 IT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가능

제출 서류

- 1.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이 「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」제2조 제2호에 따른 **영업비밀에 해당함을 입증하는 자료**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료
- 2. 대체자료
- 3. 대체자료로 적으려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, 건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성. 물리적 위험성 정보
- 4. 물질안전보건자료
- 5. 산안법 제104조에 따른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(100% 기재한 경우는 제외)
- 6. 그 밖에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대체자료로 적도록 승인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
- ※ 단, R&D 물질의 경우 1, 6번 자료 생략하여 제출 가능

처리 기간

- 승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
 (보완 발생시 연장 가능)
- R&D 물질의 경우 승인 신청을 받은 날 로부터 2주 이내



영업비밀 사전승인 제도

대체 함유량 기재 방법 :

- 1.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%미만 : ±10% 내에서 범위로 기재
- 2. 비공개하고자 하는 구성성분의 원래 함유량이 25%이상 : ±20% 내에서 범위로 기재

대체 명칭 기재 방법 : 환경부의 총칭명 명명방법에 따름 (자료보호신청서의 작성방법 및 보호자료 관리방법 등에 관한 규정_환경부고시 2018-237호 별표 총칭명의 명명방법)

예시: 1,1,3-Triethoxy-3-methylpentane CAS No 72152-74-0

가능한 총칭명 ① Triethoxy-3-methylalkane

② Alkoxy-3-methylalkane(C=4~6)

<mark>비공개승인 번호 부여 방법 : 예시</mark> T - 2 | 0 | 2 | 1 |- 0 | 0 | 0 | 0 | 1

연장 승인이 되더라도 승인번호는 최초 승인 결정 시 부여받은 번호와 동일



대체자료 적용 제외물질(= 구 영업비밀 인정 제외 대상)

	현행		개정
1.	제조 등 금지물질	1.	제조 등 금지물질
2.	허가대상물질	2.	허가대상물질
3.	관리대상 유해물질	3.	관리대상 유해물질
4.	유독물질(화학물질관리법)	4.	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
		5.	특수건강진단대상 유해인자
		6.	유해화학물질 및 CMR고시 물질(화평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 단서에서 정하는 화학물질)

인정 제외 대상 확대에 따라

- 1. 기존 영업비밀 구성성분들 중 시행일 이후 더 이상 영업비밀로 할 수 없는 구성성분 선별 작업 필요
- 2. 영업비밀 가능한 구성성분들이라도 간추릴 필요 있음(수수료 부담 등)
- 3. 상기 규제들 중에는 ~화합물이 있는 경우 규제에 해당 카스번호가 없더라도 해당할 수 있으니 주의 요함



건강 및 환경유해성 분류에 대한 한계기준 농도 변화

유해성 분류 및 구분	한계 농도(%)
급성 독성 :	
- 구분 1부터 구분 3	0.1
- 구분 4	1
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성	1
심한 눈 손상성/눈 자극성	1
수생환경 유해성 :	
- 급성 구분 1	0.1
- 만성 구분 1	0.1
- 만성 구분 2부터 구분 4	1

구분	건강 및 환경 유해	한계농도	
	1. 급성 독성	1%	
	2. 피부 부식성/피부 자극	1%	
	3. 심한 눈 손상성/눈 자 ⁼	1%	
	4. 호흡기 과민성	0.1%	
	5. 피부 과민성	0.1%	
건강 유해성	6. 생식세포 변이원성	1A 및 1B	0.1%
10 mmo		2	1%
	7. 발암성	0.1%	
	8. 생식독성	0.1%	
	9. 특정표적장기독성 – 1	1%	
	10. 특정표적장기독성 –	1%	
	11. 흡인 유해성	1%	
환경 유해성	12. 수생환경 유해성		1%
E 0 11 41 0	13. 오존층 유해성	0.1%	

한계농도란 GHS 분류에 사용하는 기준이 아닌 **3번 구성성분에 기재할 지 여부를 결정**하는 구성성분 각각의 기준으로 보아야 함



국외 제조자 선임

	개정 전(현행)	개정 후
국외 제조자의 선임	• 규정 없음	수입화학물질의 경우 구성성분 정보, 비공 개정보 승인심사 등에 필요한 자료는 국외 제조자가 국내 수입자를 갈음할 수 있는 자 를 선임하여 제출 가능

선임 방법: 별지 제68호서식의 선임서 또는 해임서에 근거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
제출기관: 관할노동청(지청)

처리 기간: 신고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 신고증 발급

근거서류: 사업자등록증, 선임/해임 계약서 사본



기재사항의 변경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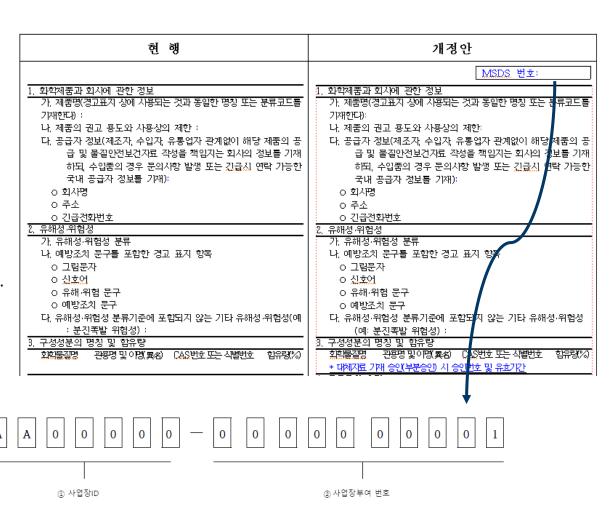
MSDS 번호

상단에 MSDS 번호를 기재한다.

대체자료 기재사항

3번 항목에 대체자료 기재 승인 시

<mark>승인번호와 유효기간</mark>을 기재한다.





용도분류체계(48개 체계, 1가지 이상 기록)

연번	용도	설명	
1	원료 및 중간체	새로운 물질의 합성, 혼합물의 배합 등에 사용되는 원료 및 그 과정에서	
	Feed materials	발생되는 중간체	
2	접착제 및 실런트	드 무네이 저초며은 저하시키기나도 게이 게쉐르 겨하니키는 모지	
	Adhesives, sealants	두 물체의 접촉면을 접합시키거나 두 개의 개체를 결합시키는 물질	
3	흡착제	가스나 액체를 흡착하는 물질	
3	Adsorbents		
	방향제 및 탈취제 등	실내 공기 중에 냄새를 발생시키거나 의류 등의 냄새를 제거하는데 사용	
4	Air care products	되는 물질	
5	냉동방지 및 결빙제거제	냉각에 의하여 고화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얼음을 제거하는 물질 	
5	Anti-Freeze and de-icing products	경역에 의약적 포와되는 것들 경시약기나 월급을 제기약는 풀일	
6	금속(금속 광물 포함) 및 합금	납, 구리 등 하나의 원소로 이루어진 금속 및 하나의 금속에 한 종류 이상	
	Base metals and alloyes	의 금속을 첨가하여 만든 금속	
7	살생물제	농작물 이외의 대상에 대하여 유해생물을 제거, 무해화(無害化) 또는 억	
	Biocidal products	제하기 위해 사용되는 물질(농약 제외)	


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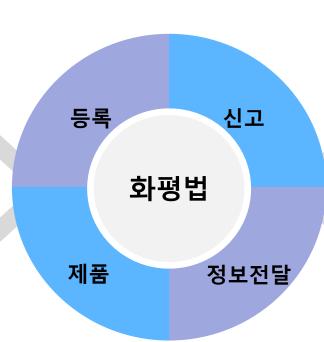
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

등록

- 연간 0.1ton 이상의 신규화학물질
- 연간 1ton 이상의
 기존화학물질
 (단, 사전신고 필요)

제품

- 중점관리물질함유제품
- 각 물질함유량 0.1% 초과 & 연간 1ton 이상 중점관리대상물질



신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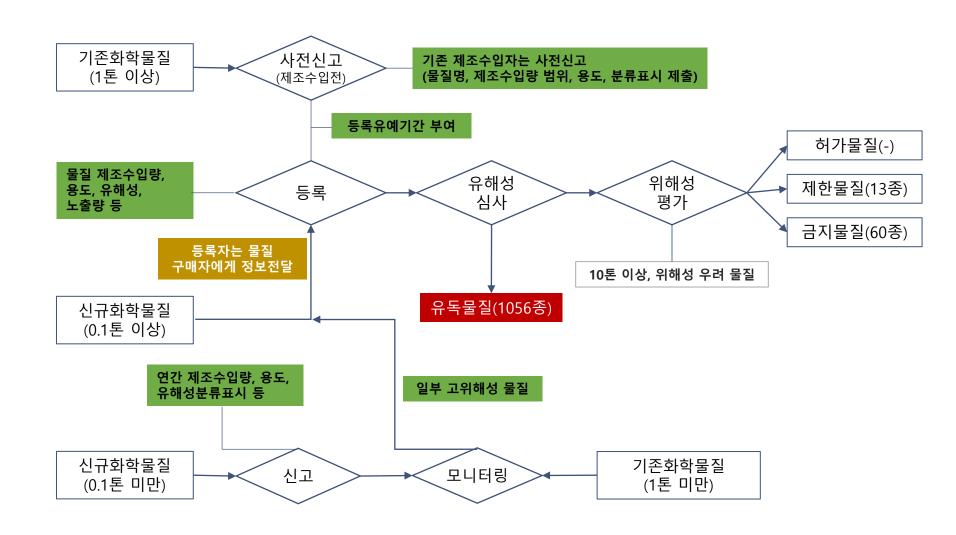
- 연간 0.1ton 미만의 신규화학물질
- 유해법 당시 연간 0.1ton 미만,고분자(조건확인필요) 면제를 받은 신규화학물질

정보전달

- 등록 및 신고한 화학물질
- 유해화학물질 및 이를 기준량 이하로 함유하여도 별표 7의 분류 및 표시에 의해 기준 이상이 되는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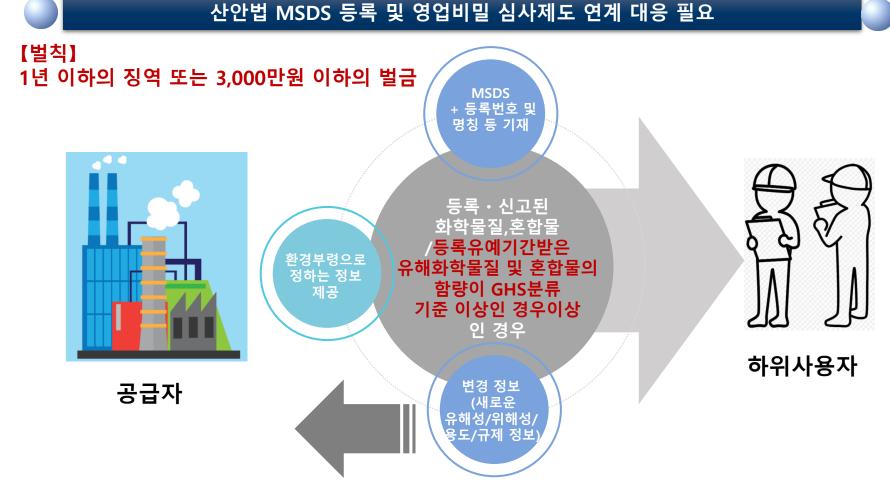


화평법상 화학물질관리 프로세스





화평법상 정보전달의 의무



변경 정보를 안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함



화학물질관리법



신규유독물질지정에 따른 사업장 이행사항

•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의 확인명세서 제출

-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확인명세의 재제출 필요
- 재제출을 위한 LOC 신규 수령 필요

•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의 MSDS 및 라벨 갱신

-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GHS라벨 갱신 필요
- 변경사항 발생 즉시 해당 내용 반영된 MSDS 수정 및 제공 필요

• 신규 지정된 유독물질의 영업허가

- 유독물질 지정고시 시행일로부터 **2년 이내**에 영업허가 취득 필요

• 유해화학물질취급기준

- 별표1 : 취급기준 -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

- 별표5 : 취급시설 설치 및 관리기준 - 시행일로부터 4년 이내



확인명세서

확인명세

- 화학물질을 제조·수입하는 자는 제조·수입 전 해당 화학물질이 다음에 해당하는 지를 확인하고 그 내용을 관할기관에 제출
- 기존화학물질, 신규화학물질, 유독물질, 허가물질, 제한물질, 금지물질, 사고대비물질
- 동일 제품은 최초 1회만 제출, 구성성분이 변경되면 다시 제출
-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

○ 확인명세 준비서류

준비서류

- 확인명세서(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)
- 관련 증빙서류 (다음 중 1가지 이상 첨부)
- 성분명세서: 제조·수입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, 함량, CAS번호 등
- 화학물질확인증명서 (제조·수입자가 규제대상 화학물질의 해당 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, 화학물질관리협회에 요청하는 제도)
- LOC(Letter of Confirmation)
- 제출기관 :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

확인명세 면제대상

- ▼ 특정 고체 형태로 일정 기능을 발휘하는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
- ▼ 기계에 내장된 채로 수입되는 화학물질
- ▼ 해당 화학물질이 중간생성물로 생성되는 경우
- ☑ 공기, 햇빛 등 환경적 요인에 노출되어 우발적으로 일어나는 화학 반응으로 생성된 화학물질
- ☑ 환경부고시 「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」 별표1 해당 시
- ☑ 환경부고시 「등록 또는 신고 면제대상 화학물질」 별표2 해당 시
- ▼ 개인이 일상생활에서 소비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(단, 유해화학물질 제외)
- ▼ 화관법 적용범위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(법 제3조)





- ○과태료
- 확인명세 <mark>미제출 또는 거짓제출</mark> : 1천만원 이하 과태료



유독물질 수입신고

수입신고

- 유독물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는 유독물질의 종류와 용도 등을 관할 환경청에 신고
- 다음 변경 건이 발생하는 경우, 변경신고 진행
 - 종류 또는 함량의 변경
 - 수입 예정물량 변경 (50% 이상 증가하는 경우)
 - 용도 변경
 - 사업장의 명칭, 소재지, 대표자명 변경
- 화학물질관리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 관련

○ 유독물질 수입신고 준비서류

준비서류

- 수입신고서(화관법 시행규칙 별지 제23호 서식)
- 유독물질의 성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
- 변경신고 시: 변경사항 증빙서류, 수입신고증 원본
- 제출기관 : 관할 환경청 (화관법 민원24를 통해 신고)

수입신고 면제대상

- ▼ 시험·연구·검사용 시약 (반드시 시약용으로 취급)
- ▼ 연간 100 kg 이하의 유독물질 수입









화평법상 정보전달의 의무

2021.04.01 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 시행

·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(법 제28조)

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

- ① 유해화학물질 영업을 하려는 자는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
 - 1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설치·운영에 관하여 적합통보를 받은 **화학사고예방관리계획서**
 - 2.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에 관하여 적합 판정을 받은 검사결과서
- ☞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 신청시 위의 서류와 함께 유해화학물질의 연간 취급예정량, 취급시설·장비· 기술인력 명세서 등 서류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



감사합니다

㈜ 켐토피아 김 도 훈(010 4855 5229)





<mark>── 켐토피아</mark>는 고객보다 먼저 고민합니다.

정직한 마음으로 흉내내는 컨설팅을 하지 않습니다.

회사명

주식회사 켐토피아

주소

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33길 48 대륭포스트타워 7차 12층

연락처

전화: 02-826-9100 FAX: 02-877-0674

설립일

2002년 2월

업종

환경컨설팅 및 관련 엔지니어링 서비스업 환경, 화학 Total 솔루션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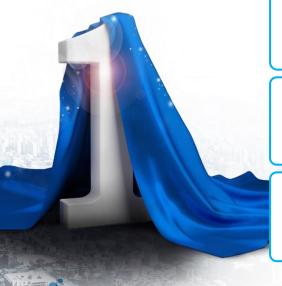
홈페이지

www.chemtopia.net





최고의 화학, 안전, 보건 전문가 그룹



■ 한국생명공학연구원 2020년 연구실(7.9만 개소) 유해인자 현황조사 사업 (수행중)

■ 한국환경공단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특화과제 지원사업

■ 연구실(7.9만개소)별 유해인자 현황조사 DB구축 및 관리시스템 구축사업

■ 해양환경 측정분석 기관 등록

■ 스톡홀름협약 등재후보물질 규제대응을 위한 실태조사 (환경부)

■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확보 관리체계 개선연구 (환경부)

■ 중점관리물질 사후관리체계 구축 (환경부)

■ 조류를 이용한 생물감시장치 특허 등록, 2종 환경영향평가업 등록

■ 국내 화학물질규제대응 공개 세미나 개최(3회), 해외(일본) 세미나 개최 (2회)

■ 웨비나 실시(일본어,3회)

■ 살생물물질 및 살생물제품 안전관리 중소기업 지원사업(한국환경산업기술원)

■ 연구활동종사자 중심 필수 안전정보 구축 및 DB 확충방안 수립연구(과학기술통신부)

■ 안심살생물제 관리기반 기술개발사업(한국환경산업기술원)

■ 조류를 이용한 생태독성 센서 모듈 개발(환경부)

■ 분류표시 개선 및 OECD 툴박스 활용연구(Ⅱ)(환경부)

■ 한국화경공단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관리 프로그램 고도화 구축사업

2017년 ~ 2018년

2020

2019년

환경부장관 표창장 수상 (2017)

■ 생활환경연구소 개소 (2018)

■ 국내외 화학물질규제대응 공개 세미나 개최 / 연구활동 종사자 중심 필수 안전정보 DB 구축

■ 화학물질정보시스템(NCIS) 기능개선 (환경부)

■ 살생물제(살균 보존제) 효능시험방법 마련(환경부)

■ 분류표시 강화 및 OECD 툴박스 활용연구(I)(환경부)

■ 연구실 연구소재별 물질안전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기획 및 시범운영 (한국생명공학연구원

2015년 ~ 2016년 ■ 화학물질정보시스템(NCIS) 고도화

■ 생활환경 안전정보 통합관리시스템 (2차) / 화평법 공동등록 시범사업기관 지정

■ 한국석유화학협회 컨소시엄 13건 협의체 수행

■ 화관법 대비 화학물질확인제도 평가 연구 (환경부)

■ 화평법에 따른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기법 도입 연구(국립환경과학원)

■ 구조 활성 관계 예측 프로그램(OSARs) 등 비 시험 대체기술 활용 및 발전 방향 연구 (국립환경과학원

2015년 이전

■ ㈜켐토피아 기업부설연구소 설립 (2010)

■ 한국석유화학협회 회원사 EU REACH 본등록 수행

■ RCC India GLP 독성시험기관 국내 독점 에이전트쉽 체결

■ 일본 GHS Data Base社 JCDBb파트너쉽 체결 (2008)

■ 세계 최대 GHS Data Base社 Chemwatch) 에이전트쉽 체결 (2007)

■ ㈜켄토피아 설립 (2002)





제안사 경영 현황

• 설립연도: 2002년 2월

• 종업원수: 87명

· 매 출 액 : 101억 (2019년)



신용평가등급





_ 특허 및 표창

환경부 장관 표창 (2017)

환경부 장관 표창 (2012)

한국환경기술인 협회 표창 환경부 장관 위촉장 특허증 (조류제거장치) 특허증 (미세조류를 이용한 수질 감시장치)



특허출원 (MSDS 적정성평가 및 결과 보고서 자동작성 프로그램)



특허출원 (그래핀산화물 과금속 산화물의 혼합조성을 이용한 다중화 어레이 휘발성 유기화학물 감지 장치)



















- 화학물질등록
- •협의체 운영
- 대리인(OR)
- ●공급망관리
- 인벤토리구축
- ◦사전신고
- •물성독성시험
- QSAR/ReadAcross

- 환경위해성평가
- 소비자위해성평가
- •근로자위해성평가
- 작업환경측정
- 환경영향평가(2종)

해외등록

- •살생물제품 및 처리제품 표시사항
- 살생물제
- •살생물 물질 및 제품 승인
-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
- •식품과 닿는 물질
- •제품 위해성평가
-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
- 위생용품 및 화장품
- •확인명세서
- 장외영향평가
- 위해관리계획서
- 설치검사컨설팅
- 안전진단(안전성평가) 컨설팅
 - ●비산배출 신고
 - 화학물질배출량조사
 - ◦통합환경관리계획서
 - ◦배출저감계획서

위해성 평가

살생물제

(주)켐토피아

사업 분야

화관법 및 통합법

제품

컨설팅



GHS MSDS

솔루션

- EU REACH
- 터키등록
- 중국등록
- ◦기타국가
- ●미국등록
- CAS등록
- 일본등록
- •물성 및 독성시험
- ●대만등록
 - MSDS작성
 - MSDS자동생성
 - 화학물질DB
 - ◦전세계규제DB

◦화학물질관리 (Dr.CMS) 화학관련 ◦ MSDS자동작성 (Dr.MSDS)

- ●비산배출모니터링 (LDAR+)
- ◦안전보건환경 (SHE,EHS)
- 가상현실 (VR), 혼합현실(MR)
- ●SmartSafety(드론, 누출센서 모니터링)

화평법